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39
----------	------

2021년 3월 3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2월 4일, 이호대 의원

2.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3. 상정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1년 3월 3일 상정, 수정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호대 의원)

1. 제안이유

○ 2020년 10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원격수업 실시가 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더불어 법에 따른 순회교육 실시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원격수업과 순회교육 실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4일 이호대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39호로 발의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원격수업과 순회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면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장애유형 중 하나로 ‘건강장애’를 규정하고 있고,<sup>1)</sup>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에서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sup>2)</sup>

-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하여 원격수업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여 건강장애학생의 학습 지체 및 유급 문제를 해소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표] 원격수업 시스템 운영기관 현황<sup>3)</sup>**

(단위 : 학급, 명)

기관명	학급 수	강사 수	전체 학생 수			월 평균 이용 학생 수
			건강 장애	기타	계	
꿀맛무지개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14	14	169	40	209	195
꿈사랑학교 (경상남도교육청)	48	30	806	209	1,015	981
한국교육개발원	38	29	452	262	714	627
계	100	73	1,427	511	1,938	1,803

- 이에 지난 2020년 10월 20일 국회에서는 건강장애학생뿐만 아니라 감염병 유행 등 재난으로 인해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순회 교육과 함께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3)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2020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수교육법」을 개정할 바 있습니다.<sup>4)</sup>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제공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

##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안 제8조의2 제1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2275, 2021.2.17.).

그러나 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중 교육감의 책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의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일은 2021년 4월 21일이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494호, 2020. 10. 20., 일부개정]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칙의 경과규정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안 제8조의2제2항 ‘복지시설의료기관’은 상위법과 같이 의미의 명확성을 위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자구 및 부칙 중 시행일을 상위법과 맞게 수정함.

**VII.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139
----------	------------

제안연월일 : 2020년 3월 3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수정이유

- 일부 자구 및 부칙 중 시행일을 상위법과 맞게 수정함.

## 2. 주요내용

- “복지시설의료기관”을 “복지시설·의료기관”으로 함(안 제8조의2제2항).
- 부칙을 “이 조례는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로 함(안 부칙).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2제2항 중 “복지시설의료기관”을 “복지시설·의료기관”으로 한다.

안 부칙을 “이 조례는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 설>	<p><b>제8조의2(순회교육·원격교육 실시)</b> ① <u>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u>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 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제8조의2(순회교육·원격교육 실시)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b>복지시설·의료기관</b>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부 칙</p> <p><b>제1조(시행일)</b> 이 조례는 <b>공포한 날</b>부터 시행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b>2021년 4월 21일</b>부터 시행한다.</p>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순회교육·원격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제8조의2(순회교육·원격교육 실시)</p> <p>① <u>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 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u>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 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이 조례는 2021년 4월 21일부터 시 행한다.</u></p>